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규임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정규임용심사위원회)”를 “(임용심사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”를 “제18조의 3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”로, “포함한 위원”을 “포함하여”로, “이하로”를 “이하의 위원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,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 영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기간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”을 “영 제20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보임용 기간 만료”를 “제9조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개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9조(정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	제9조(임용심사위원회) ①----- ----- 제18조의3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----- -----포함하여----- 이하의 위원으로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⑤ 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 영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기간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<신설>	⑥ 위원회는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

	<u>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</u>
⑤ (생략)	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0조(정규임용심사) ① (생략)	제10조(정규임용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	2.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<u>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</u>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 제9조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----- -----.
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<u>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.</u>	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락처	(02) 3150 - 1239